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업·농촌디자인 개념 신설 및 지원시책 등 수립·추진 〉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05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업·농촌디자인 개념 신설 및 지원시책 등 수립·추진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2.
3.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농업·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농촌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업·농촌디자인 개념 신설 및 지원시책 등 수립·추진

개정안은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디자인 지원시책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농업·농촌디자인”이란 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농업인,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농촌마을디자인·농업용시설디자인·도시농업공간디자인·농업기계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③ ~ ⑦ (생략) <u><신설></u>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농업·농촌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u> ③ ~ ⑦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2(농업·농촌디자인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농업·농촌의 공간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촌과 농기구, 농산물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도 상당부분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현행 법률 체계의 규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진흥은 농업 분야 법률 체계 내에 이미 포함되는 측면이 있음.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지역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¹⁾되는데, 이러한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려는 개정안의 개념과 기능적으로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농촌공간의 계획적 개발·이용·보전 및 정주환경 정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농촌마을디자인·농업용시설디자인 등 공간 관련 디자인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러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농촌디자인 진흥에 대한 사항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이미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입법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u>농촌융복합산업</u>”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u>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 입법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u>농촌공간 재구조화</u>”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u>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u>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u>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u>하는 것을 말한다. 3. “<u>농촌공간 재생</u>”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u>일자리·경제기반 창출, 주거·정주 환경정비,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u>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은 농업 분야 법률만이 아니라, 현행 디자인 관련 법률 체계 내에서도 포함되는 측면이 있음.

먼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는 "산업디자인"을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의 "농업·농촌디자인" 정의는 산업디자인 정의의 문언 구조를 원용하면서 적용 분야만을 농업·농촌으로 한정된 것으로, 농업기계디자인, 농수산물·식품 패키지디자인 등은 이미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농업농촌디자인과 산업디자인 개념 비교]

농업·농촌디자인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u>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u> 농업인, 생산자 및 소비자의 <u>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u> 을 말하며, 농촌마을디자인·농업용시설디자인·도시농업공간디자인·농업기계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품 및 서비스 등의 <u>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u>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u>창작 및 개선 행위</u>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 <u>와 그 결과물</u> 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²⁾상 “공공디자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포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괄하는데, 농업용 수리시설 등 공공인프라에 대한 농촌공간 디자인은 이미 동법의 규율 범위에 해당하고 있음.

이처럼 “농업·농촌디자인”은 농업 관련 법률 체계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개념과, 디자인 관련 법률 체계에서는 산업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개념에 포함되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농업·농촌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 영역으로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률이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규율 범위 안에서 부수적·간접적으로 다루어 온 농업·농촌 영역의 디자인을 농정의 의제로서 독립시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관 부처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서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디자인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농업·농촌디자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실익도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업무의 유사·중복 소지가 있고,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 정책 수단의 활용만으로도 입법 의도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음.

[관계 부처 의견 요지]

구분	세부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입법 행위 없이도 문체부·산업부·지방정부 등과의 협력 강화 및 별도 재정사업 도입 등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법상 공공디자인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 정체성의 특성을 포함하여 디자인 진흥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과 중복 소지
기획예산처	농업·농촌 디자인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및 산업부가 주관하는 산업디자인 등 부처 간 업무 유사·중복성 우려
산업통상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상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제품, 포장, 환경, 시각, 서비스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중복

이를 감안하면, 농업·농촌디자인 진흥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개정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관계부처 간의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³⁾

문 의 처
02)6788-5417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